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 〉

■ 박정하·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82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임오경 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2025. 1. 9.

다. 회 부 일: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중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안 제49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략)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u>국가</u> <u>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된 <u>관람료에</u> 해당하는 <u>비용을</u>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대통</u> <u>령령으로</u> ----- ----- <u>관람료를</u> -----.

나. 검토의견

-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¹⁾에 대한 국민갈등 해소 및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유산을 공개하고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민간소유자등에게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³⁾, 민간소유자등은 받은 보조금을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민간소유자등은 지원금을 인건비, 경상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교육 및 홍보, 안전관리), 시설관리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매년 정산·실적보고서,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함⁴⁾.

1) 관람료는 민간 소유의 국가지정유산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문화유산 공개 의무화에 따른 관리비용 마련을 위해 도입됨(1962년).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은 2024년 63개소를 대상으로 552억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64개소, 566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집행항목]

항 목	세부항목
인건비	기관운영 인건비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 수수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관람, 체험, 휴게 및 편의시설 관리 물품구입 등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	소방, 전기·통신, 냉난방 유지관리 등
	관람객 안전장비, 구호 및 구급 물품 등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 관리 등

* 자료: 「2025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집행지침」(국가유산청)

- 그런데,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이 관람료 감면에 따른 민간소유자등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민간소유자등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등이 감면된 관람료에 대한 보전 비용을 자율적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람료 감면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간소유자

4) 「2025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집행지침」(국가유산청)

등⁵⁾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관람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문화유산 공개에 대한 관람료 징수 목적을 감안할 때, 관람료 감면에 대한 국고지원은 문화유산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지원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지원하는 것이 재정원칙에 부합하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고, 용도가 명시되어야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낭비 방지 가능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5)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69곳 중 4곳(단양 고수동굴,강릉 선교장, 구례 운조루 고택, 제주 삼성혈)이 미참여중임.

□ 주요내용

- 사업명: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 사업목적: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국가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지원
- 사업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준용규정)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
 - 지원조건: 국가지정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을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 지원내용: 관람료 수입 감면비용, 관람환경개선 시설관리유지비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 2023 ~ 계속
- 소요예산: ('23) 419억원, ('24) 552억원, ('25) 566억원

□ 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지원현황

- 사업내용
 - 국가지정유산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징수하던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에 감면된 비용 지원
 - 관람료 감면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관람편의 시설 정비 및 개선

○ 지원현황

지원년도	2023	2024	2025	비고
사업대상	64개소	64개소	65개소	
지원금액	419억원(8개월)	552억원(12개월)	566억원(12개월)	

□ 사업 추진 효과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경제적 가치 추정액: 2,566억원

* 관련 연구 용역('24.11월)

-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강화: 1,268억원,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1,298억원

참고 2

관람료 감면 지원 사업 미참여 대상

○ 관람료 감면 대상 69곳 중 미참여 4개소

구 분	국가 유산명	소유자 (관리단체)	소재지	국가유산명	관람료 (성인)	미참여 사유 * 기관 관계자 인터뷰
1	단양 고수동굴	(주)유신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연기념물 단양 고수동굴	11,000원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면 신 청할 수 없음
2	강릉 선교장	(주)배다리 문화원	강원 강릉시	국가민속문화유산 강릉 선교장	5,000원	· 현재 관람료 징 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 음
3	구례 운조루 고택	류흥수	전남 구례군 토지면	국가민속문화유산 구례 운조루 고택	1,000원	· 부수비용에 대 한 사용이 가능하 다면 신청할 의향 이 있음
4	제주 삼성혈	고양부 삼성사재단	제주 제주시	사적 제주 삼성혈	4,000원	· 수입원이 토지 임대료와 관람료 로 되어 있는데, 관람료 수입만큼 지원이 된다면 신 청할 의향이 있음